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1

발의연월일: 2020. 7. 10.

발 의 자:서영석·최혜영·문진석

김성주 · 강선우 · 고영인

허종식 · 김원이 · 김경협

인재근 · 신현영 · 권인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하여 자가격리자의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고 있으나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은 동의에 기반하여 설치할수 있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업무가 가중되고 대응 효과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이에 자가격리와 함께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의 설치 및 사용 명

령을 동시에 부과함으로써 격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감염 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위치정보 수집 등이 가능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의 설치·사용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②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	
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	
을 할 수 있다.	<u>.</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2. 위치정보 수집 등이 가능
	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의
	<u>설치·사용</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⑪ (생 략)	③ ~ ① (현행과 같음)